

金融實名制 實施後의 政策方向

—政府의 政策的 側面—

李 桓 均*

I. 金融實名制의 實施

1. 8.12 金融實名制 實施의 内容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金融實名制는 法改正 過程에서 야기될 수 있는 金融市場 동요 등 혼란과 부작용을 最小化 하기 위해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命令(제16호)을 통하여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번 措置의 基本方向으로는 '93년 8월 12일부터 모든 金融去來는 實地名義에 의하도록 하고,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한 綜合課稅는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97년 5월에 첫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株式讓渡差益은 新經濟 5個年計劃期間 중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8.12措置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金融機關과의 去來時에 實地名義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실명거래자는 시행 후 첫 거래시에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非實名 金融資產에 대한 조치로서 非實名에 의한 資金引出은 禁止시키고, 借名計座의 實名轉換時에는 과거에 과소징수된 所得稅를 추징하며 命令施行日 이후 2개월까지는 實名轉換義務期間으로 하여 假借名計座를 모두 實名으로 轉換토록 하였다. 그리고 동 기간중 實名轉換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實名轉換된 金融資產에 대하여 計座當 最高 5,000만원까지 資金出處 調査를 免除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중에 實名으로 轉換되지 않은 金融資產에 대해서는 매년 10% 씩 최고

* 財務部 第 1 次官補

60%까지의 過徵金을 부과하며, 利子 配當所得에 대하여 96.75%로 差等課稅도록 하였다. 또한 동 기간중 預金引出事態를 방지하기 위하여 純現金引出額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내용을 國稅廳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金融實名制의 早期定着을 위한 措置로서 金融去來情報에 대한 秘密保障을 더욱 強化하여, 名義人の 요구나 동의없이는 원칙적으로 金融情報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秘密保障義務의 違反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金融實名制의 실시초기에 예상되는 각종 副作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金融實名制의 實施와 동시에 각종 補完對策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補完對策으로는 ① 土地去來 許可區域의 대폭 擴大 및 不動產投機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投機團束班의 가동, ② 시행초기의 短期的 衝擊에 대비한 證市 및 金融市場에 대한 安定化 對策의 마련, ③ 贈與性 個人送金時 國세청 통보강화 등 자금의 海外流出에 대한 규제의 강화, ④ 中小企業의 資金難을 해소하기 위한 緊急資金支援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信用保證 등 保證制度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信用保證機關의 保證限度를 基本財產의 15배에서 30배로 2배 확대하는가 하면, 同一企業當 保證限度도 확대하여 緊急經營安定支援資金에 대해서는 매출액 범위내 전액을, 그리고 緊急運轉資金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frac{1}{2}$ 까지 保證支援하도록 하였다. 또한 委託保證制度를 活性化하여 保證基金에 가지 않고도 銀行에서 保證과 동시에 貸出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相互信用金庫의 金融仲介機能의 活性化를 유도함으로써 零細事業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與·受信 金利를 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商業어음 이외에 融通 어음의 割引을 허용하는 한편, 어음割引 金利도 自律化하였다. 그리고 庶民金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信用協同組合의 추가신설을 허용하고 자산규모 200억 이상인 信用協同組合에 대하여 어음擔保貸出을 허용하고, 조합원 1인당 貸出限度도 3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金融實名制의 실시에 따라 中小企業, 특히 中小建設業體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도록 國家機關이 工事物品의 製造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先金支給比率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

2. 實施狀況에 따른 諸般 後續措置

(1) 稅制改編

金融實名制의 實施에 따라 課稅資料가 陽性化 되고 그 결과로 課稅對象者들의

租稅負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實名制의 早期定着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稅率 및 控除額 水準의 調整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稅負擔을 緩和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勤勞者 및 相續 贈與 財產에 대한 稅負擔 輕減

勤勞者들의 稅負擔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所得稅率을 1~3%포인트 인하하고 所得控除額을 기초공제 연 72만원과 근로소득공제 270~620만원으로 확대조정하였다. 또한 金融資產에 대한 課稅價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相續 贈與稅의 累進 稅負擔을 緩和하고 각종 控除額을 <표 1>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표 1> 相續 贈與稅에 관한 稅率 및 控除額 조정내역

구 分	현 행	개 정(안)
상속세율	10~55%	10~50%
증여세율	15~60%	15~55%
배우자간 기초공제액	6,000만원	1억원
배우자간 상속공제액	1억원 + (결혼년수×600만원)	1억원 + (결혼년수×1,200만원)
배우자간 증여공제액	1,500만원 + (결혼년수×100만원)	3,000만원 + (결혼년수×300만원)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액	1,500만원	3,000만원 (미성년자제외)

② 中小製造業體에 대한 法人稅 및 所得稅 輕減

中小製造業體에 대한 法人稅率을 課稅標準에 관계없이 각각 2%포인트씩 引下함으로써 課稅標準이 1억원이하인 경우 18%,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2%로 되었다. 또한 實名制의 施行에 따라 資金難 등 어려움을 겪는 中小製造業體에 대해 '93년말로 종료되는 稅額減免制度를 계속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94년도에는 減稅率을 30% 까지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2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③ 事業者의 附加價值稅 負擔 輕減

實名制 實施에 따른 課稅資料의 陽性化로 課稅特例者가 一般課稅者로 전환되더라도 納付稅額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附加價值稅 限界稅額控除制度를 신설하여 '93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輕減對象은 연간 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의 個人一般課稅業者가 되며, 一般課稅者로 원래 납부할 세액과 課稅特例者로 있을 경우 부담할 세액과의 차액에 대한一定率을 경감조치하였다. 그리고 課稅資料의 陽性化를 감안하여 附加價值稅 免稅點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現實化하였다.

〈표 2〉 事業者의 附加價值稅 免稅點의 改正案

구 분	현 행	개 정
연간매출액	400만원	600만원
대상인원	28만명	63만명
과세특례자 대비	21%	47%

(2) 金融市場의 安定

實名制의 實施로 인한 金融市場의 混亂을 最小化함으로써 金融市場의 安定을 기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對策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金融商品의 多樣化 등을 통한 制度金融圈의 資金離脫 防止와 受信基盤 強化를 위한 金融市場安定化 對策을 마련·시행('93. 8. 25)하고 있고, 株式市場의 安定화 對策을 수립 추진('93. 8. 13, '93. 9. 7)하며, 債券市場 活性化 對策의 마련 시행으로 기업의 直接資金 調達 擴充 및 市場實勢金利의 安定을 도모('93. 9. 1)하고 있다.

(3) 國民不安心理의 解消 등을 위한 後續措置

金融實名制의 基本原則下에서 經濟活動을 위축시키는 근거없는 國민의 不安心理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두차례(8. 31 및 9. 24)에 걸쳐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實名轉換에 따른 稅務調查의 緩和

비록 國稅廳에 實名轉換內容이 통보되더라도 현행 조사기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금액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배제시키기로 하였다. 個人別로 2억원까지

완화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당사자의 年齡, 職業, 事業經歷, 所得水準, 財產狀態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 소명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資金出處調査를 실시한다.

② 現金引出資料에 대한 國稅廳 調査 排除

計座當 3천만원을 초과하여 現金을 인출하여 國稅廳에 통보되더라도 동 現金引出資料를 稅務調查에 活用하지 않기로 하였다.

③ 課稅標準 陽性化時 過去 稅金에 대한 稅務調查 排除

實名制實施로 사업자의 課稅標準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에도 過去分에 대한 稅務調查를 排除하고, 특히 課稅特例者(연매출 3,6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체의 稅務調查를 배제시키기로 하였다.

④ 法人名義 實名化에 대한 稅務調查 免除

法人이 임직원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던 非實名資產을法人名義로 轉換하고 法人の 資產으로 計上하는 경우 資金造成經緯에 대한 일체의 稅務調查를 免除하기로 하였다.

⑤ 贈與稅 自進納付者에 대한 稅務調查 免除

非實名資金을 實名轉換하고 贈與稅를 自進納付하는 개인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관련 租稅에 대한 稅務調查를 일체 免除하였다.

⑥ 長期產業債券의 發行

露出을 꺼려하는 非實名資金이나 實名轉換 후 퇴장된 자금을 產業資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10년만기 長期產業債券(30억원 이상 : 연리 1%, 30억원 미만 : 연리 3%)을 發行하고 最初買入者에 대하여 稅務調查를 排除하였다.

⑦ 利子 · 配當 所得稅의 追徵方法의 改善

非實名資金의 實名轉換時 追徵所得稅額을 우선 簡易計算한 후 事後精算하는 期間을 6개월에서 1년으로 延長하고, 源泉徵收 資料의 보관부실로 事後精算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범위내에서 事後精算하도록 하였다.

II. 金融實名制의 實施 後 市場動向

金融實名制 施行 初期의 金融市場은 金融圈으로부터 資金離脫 등 副作用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株式價格은 급락하고 債券去來가 감소하는 등 一時的으로 不安定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實名制 實施 2개월을 맞은 金融市場은 지속적인 金融市場 安定政策에 힘입어 市場金利가 實名制 實施前보다 하락하고 株式市場도 安定勢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행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通貨는 추석자금의 早期還流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外換市場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金融圈別 受信은 전반적으로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實名制의 影響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私債市場은 實施以後去來가 크게 위축되었고 점차 市場이 分化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市場沈滯와去來의 困難으로 轉業이나 閉業을 고려하는 仲介業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實名制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去來方法을 모색하면서 市場에 잔류하고자하는 움직임도 探知되고 있다. 實名制의 實施以後 私債金利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때 暴騰하기도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는 實施以前의 수준으로 復歸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實名制 實施以後 私債金利의 動向

일자	8. 12	8. 31	9. 15	9. 28	10. 12
사채금리 (C급, %)	20.4	20.4	36.0	24.0	21.6

(자료 : 제 2 금융권 텁문자료의 평균치)

不動產 및 實物市場은 정부의 강력한 去來規制 방침으로 流動資金의 流入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住宅 및 土地價格은 강력한 投機抑制 施策으로 實名制 실시이후 弱勢 또는 保合勢를 유지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實物資產의 價格은 稅務調查強化 등 補完對策에 힘입어 安定된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III.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

1. 현황¹⁾

(1) 實名計座의 實名確認

實名計座는 實名轉換義務期間內에 實名確認이 義務化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당한 진척으로 보이고 있어 10월 12일 현재 金額基準으로 전체의 79.6%, 그리고 계좌기준으로 58.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2) 假名計座의 實名轉換

假名計座의 實名轉換은 實名制 실시 중반까지는 다소 미진하였으나, 實名轉換義務期限인 10월 12일이 임박해지면서 轉換速度가 급격히 증가하여 10월 12일 현재 假名計座의 대부분이 實名으로 轉換되었다. 實績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計座基準으로는 80.1%에 이르는 453천좌, 金額基準으로는 96.0%에 달하는 2조 7천 500억 원이다.

(3) 借名計座의 實名轉換

實名制 實施 중반까지 借名預金의 實名轉換實績은 다소 미미하다가 實名轉換義務期限에 임박하여 轉換速度가 빨라졌으며, 그 성격상 轉換實績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實績을 보였다. 10월 12일 현재 借名計座중 2조 9천억원이 實名으로 轉換되었다. 이러한 借名計座 문제는 대부분 合意借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實名으로 轉換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나 '96년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가 施行되면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 여기서 제시된 자료들은 '93년 10월 12일 현재의 잠정치이다.

2. 評價

위의 통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實名轉換義務期間中의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實績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實名制의 초기단계 기반구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93년 8월 13일 이후 모든 金融去來는 實名으로 去來되기 때문에 이러한 實名去來 慣行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借名去來 慣行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金融資產所得의 綜合課稅制度가 시행되면 借名計座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직도 實名으로 轉換되지 않은 假名計座가 있으나, 過徵金徵收 등 制裁措置의 效果와 實名制 定着을 위한 일관성있는 政策施行으로 서서히 解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新規計座는 實名으로 開設되기 때문에 전체 金融去來에 차지하는 假名預金의 비중은 극히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3. 綜合評價

이상의 결과를 두고 實名制 實施 2개월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金融市場에 대한 衝擊은 政府의 安定化 對策을 통해 신속하게 수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려했던 不動產 등 實物投機 및 株價의 暴落事態 그리고 資金의 海外逃避도 철저하게豫防措置되었다. 특히 不動產에 대한 實物投機 단속이 이미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不動產 投機 단속을 위한 關聯法들이 土地超過利得稅 등으로 發效되어 있기 때문에 實物投機現狀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支援도 政府가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緊急支援資金을 편성하여 3만여 개에 이르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지원을 단행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金融機關과의 去來가 없는 小規模 零細業體의 경우 私金融市場의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實名去來 慣行의 基盤이 될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은 전반적으로 良好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改革措置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實名制의 早期定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實名制의 實施以前에 이미 實名制에 대한 국민적 合意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迅速하게 또한 큰 副作用 없이 定着되고 있다고 믿는다.

IV. 向後 財政 金融政策의 方向

8.12 緊急命令에 의해 實施된 金融實名制는 실시 당시 예상되었던 초기의 충격을 조기에 흡수하고, 金融去來의 實名化도 큰 副作用없이 착실히 진행되어 이제 改革의 始發點인 實名制 定着의 第1段階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金融實名制 第2段階 推進目標인 金融所得綜合課稅를 착실히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와 함께 實名制가 우리 사회의 慣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實名制의 환경적 요소인 政治 經濟 社會 각 부문의 制度와 慣行을 實名制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政策方向은 金融改革 및 稅制改革을 착실히 추진하여 實名制의 성공적인 定着을 뒷받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經濟의 總體的인 競爭力 培養에 밀거름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1. 金融改革의 확실한 推進

(1) 金利自由化的 推進

'93년 11월 1일자로 第2段階 金利自由化를 실시토록 하여 金融改革의 轉機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金利自由化 이후의 金利安定과 전전한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金融圈別로 經營合理化를 강력히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實名制 이후 金融圈別商品에 대한 受信 및 金利動向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필요시 收益率體系의 調整 등의 补完對策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 金融自律化的 推進

農·水·畜產 및 中小企業 관련 政策金融을 財政으로 轉換하고 限時的 政策金融支援을 축소하여 金融機關의 資金運用의 自律化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公開市場 操作을活性화하는 등 間接規制 通貨管理를 強化하여 實名制 이후 변화된 通貨管理 여건에 效率的으로 對應하도록 한다.

(3) 私金融의 制度金融圈으로의 吸收

第2段階 金利自由化로 規制金利가 市場金利를 어느정도 反影하게 되어 資金供給

面에서 現實化된 受信金利로 私金融의 吸收가 가능해졌다고 본다. 한편 零細商人과 中小企業의 制度金融圈의 利用擴大를 위하여 信用協同組合 등 零細金融機關의 設立을 促進하고 이들 기관의 受信基盤의 強化를 추진한다.

(4) 金融貯蓄의 增大와 金融機關 利用의 活性化 誘導

家計貯蓄의 增大를 誘導하기 위해 個人年金 貯蓄制度 및 長期住宅마련 貯蓄制度 등과 같은 長期貯蓄商品의 개발을 적극 추진시킨다. 아울러 貯蓄增大와 국민의 金融機關 利用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金融去來에 대한 秘密保障을 철저히 施行하고자 한다. 金融去來 秘密保障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어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預金秘密 保障指針」을 마련하여 施行하고자 한다.

한편 支給決済制度의 改善을 통하여 金融機關의 利用이 活性化되도록 誘導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銀行保證 定額家計手票制度의 導入, 一定金額 이상의 家計當座預金 예치분에 대한 優待金利의 適用, 그리고 公共機關의 家計手票 受領을 誘導하여 家計手票去來를 活性化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CD機를 통한 他行間 計座移替制度 등의 도입을 推進한다.

(5) 金融構造의 改編

기본적으로 金融機關의 自律的인 合併 轉換을 통한 大型化 및 專門化를 誘導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의 적용 대상기관에 현행 銀行 · 證券 · 短資 · 綜金社 외에 保險會社, 리스會社, 信用金庫를 추가하도록 하고, 地方 短資社의 綜金社 轉換基準 및 方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金融機關의 私金庫化 防止를 위한 차단장치를 강화함과 아울러 金融 下部構造의 先進化를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證券去來所에 株價指數先物市場의 開設을 위한 準備委員會를 이미 발족시켰으며, 先拂카드, 直拂카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電子資金去來法」의 제정을 檢討하고 있다. 또한 企業會計制度의 先進化와 外部監查의 效率化를 위한 法律改正을 추진하며, 信用情報의 活用度를 提高시키고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信用情報管理法」의 制定을 檢討하고 있다.

2. 稅制 및 稅政改革의 推進

實名制體制下에서의 租稅負擔體系와 財政機能을 提高시키기 위한 綜合的인 方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適正稅率體系를 摸索하고, 直接稅와 間接稅負擔을 緩和시키며, 非課稅 減稅制度의 지속적인 縮小 등이 될 것이다.

또한 綜合課稅에 대비하여 철저한 事前準備를 착오없이 進行시키고자 한다. 특히 金融機關 및 國稅廳의 電算網을 擴充시키고 金融貯蓄 基調의 維持와 租稅負擔의 衡平性이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綜合所得稅制를 發展시키겠다. 구체적으로는 稅政科學化를 통하여 根據課稅와 稅務行政의 效率化를 도모하고, 租稅研究院과 國稅廳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稅政發展研究團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한다.

V. 金融實名制의豫想되는期待效果

金融實名制의 예상되는 期待效果는 中長期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 우선 實名制가 慣行으로 착실히 定着되고, 이 과정에서 各分野의 變化와 改革이 漸進的으로 이루 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實名制 實施의 效果는 현재 金融去來에서 시작하여 政治 經濟 社會 각 부문으로 점차 擴散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그 效果가 더욱 具體化될 것이다. 中長期的으로 金融實名制는 企業의 競爭力 強化를 誘導하고 產業構造의 先進化를 促進하여 우리 경제의 成長潛在力を 擴充시키는데 寄與할 것이다. 한마디로 金融實名制는 모든 經濟主體의 意識과 慣行을 合理的이고 正常的인 方向으로 變化시킬 것을 確信하고 있다.

1. 企業

먼저 實名制의 實施로 企業經營行態의 變化가 豫想된다. 企業間 競爭方式은 종전과 같이 對外로비에 의한 競爭에서 經營合理化, 品質改善, 및 價格競爭 등 健全經營을前提로 한 競爭力으로 變化하게 될 것이다. 특히 秘資金의 造成과 運用이 어려워짐에 따라 工事受注나 物品納品에 있어서 각종 리베이트(rebate)支給慣行이 縮小되고 原價節減과 技術水準이 競爭을 主導하게 될 것이다. 變化되고 있는 經營環境에 適應하려는 企業은 顧客指向의이고 市場指向의인 經營思考를 體質化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철저한 顧客管理시스템을 導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企業이 經營能力과 營業實績에 따라 優待받는 健全한 風土가 造成될 것이다.

둘째로는 企業會計의 健全化와 企業所有構造의 透明性이 確保될 것이다. 接待費, 機密費 등 消費性 經費使用이 줄어들고 假支給金 規模가縮小되어 企業會計와 内部資金管理의 健全化가 이루어질 것이며, 株式의 僞裝分散 規模가縮小되어 企業所有의 透明性이 確保될 것이다.

셋째로는 成熟된 勞使關係의 發展을 期待할 수 있다. 經營內容의 透明性이 增大되어 企業主에 대한 信賴度와 透明性이 높아짐에 따라 勤勞者의 不當한 要求나 經營干渉이縮小될 것이며, 社會의 衡平性이 提高되어 勤勞意慾이 鼓吹되게 된다.

넷째로는 流通秩序의 改善으로 流通產業의 近代化를 促進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商去來時 無資料 去來慣行이縮小되고 이에 따른 金錢登錄機의 普及이擴大되며, 領收證 주고받기 움직임이擴散되고 있다. 또한 情報 및 物流시스템이 구축됨과 아울러 商圈의 調整과 店鋪의 大型化가 促進되어 近代的 流通體系가 確立될 것이다. 한편 下都給 질서가改善되어 公正去來秩序가 確立되며, 去來資料의 露出로 인하여 의약품거래 등의 前近代的 流通體系가 현저히 改善되고, 書畫, 骨董品의 競賣制度 등 새로운 流通시스템이 發展할 것으로 전망된다.

2. 金融

實名制 實施로 金融改革이 促進될 것이며, 이에따라 金融仲介機能이 提高되고 金融機關間 競爭이 促進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國內 金融產業競爭力이 強化되고 顧客指向의in 經營姿勢가 確立될 것이다.

3. 租稅制度 및 行政

金融實名制의 實施로 租稅制度 및 行政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더 先進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특히 稅政科學화와 根據課稅가 이루어지고 租稅負擔의 衡平性이 提高될 것이다. 綜合所得稅制의 發展으로 租稅負擔의 수직적·수평적 公平性이 增大되고 전반적인 租稅體系에 있어서 直接稅의 比重이增加할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課稅資料가 대부분 露出되고 人別·企業別 종합적인 稅源管理가 가능해짐에 따라 自進申告 納付制度로의 移行이 可能해질 것이다.

稅務調查는 地下經濟를 통한 所得隱蔽 등 조직적인 脫漏부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課稅捕捉率이 높아짐에 따라 租稅行政의 效率性이 提高될 것이다. 國稅行政組織에 있어서 一線 稅務署는 納稅者의 신고·접수 및 民願事務를 處理하는

奉仕行政機關으로 발전하고, 租稅公務員과의 접촉기회가 줄어들고, 課稅裁量權이縮小됨에 따라 租稅摩擦이 현저히 減少될 것이다. 이 결과로 국민들의 租稅行政에 대한 이미지가 提高될 것이며 결국 명랑한 稅政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VI. 結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實名制는 定着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課題는 산적해 있다. 한마디로 實名制의 成功的 定着을 위한 制度의 效率的인 管理가 關鍵이라고 하겠다. 金融實名制는 좁은 의미로는 金融 및 稅制改革을 할 수 있는 出發點에 불과하지만, 넓은 의미로 인식하면 經濟改革, 政治改革, 社會改革으로 이어져 결국 國民의 意識改革의 形態로 發展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先進國으로 進入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意識改革의 成敗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政治資金의 造成過程이 투명해짐에 따라 選舉風土가 변화하고 國民生活에서 道德性이 회복되어 깨끗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면 이것이 곧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意識改革은 經濟改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金融實名制가 總體的 改革을 實現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따라서 政府를 비롯하여 國民 모두가渾然一體가 되어 좁게는 金融改革, 넓게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部門의 改革으로擴散되어 우리 國民이 의도하는 先進國으로의 進入을 促進시키도록 이 制度의 成功的 定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